

# 식품위생 감시현황과 대책

보건사회부 위생감시과

課長 沈漢燮

## 1. 현황

### 가. 대상업소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: 과자류, 청량음료, 두부, 육가공품제조업 등 24개 업종

- 판매·운반 처리업소 : 유류판매업, 식육판매업 등 6개업종
- 식품접객업소 : 대중음식점, 유홍음식점, 과자점, 다방등 5개업종
- 환경접객업소 : 숙박업, 이용업, 미용업, 목욕탕업, 유기장업 등 7개업종

계	식품제조·가공업소	판매 운반처리업소	식품 접객업소	환경 접객업소
430,881 개소	16,398	44,722	229,762	139,999

### 나. 식품위생종사 공무원 현황

구분	정원	현원	감시원증 소지자	비고
계	1,085	1,036	550	

### 다. 지도단속체계

#### ○ 행정기관 지도단속

- 단속기관 : 보건사회부, 시·도(환경위생과), 시·군·구(위생과, 사회과 위생계)
- 단속회수
  - 정기 : 연 2회
  - 특별 : 수시단속 실시

#### ○ 업종단체 차율지도

- 차율지도 승인 단체

대한다방조합연합회	398	
축산기업조합중앙회	596	
대한제과협회	146	
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	26	
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	17	
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	3	
대한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	2	
한국이용사회중앙회	536	
대한미용사회중앙회	380	
대한숙박업중앙회	404	
한국목욕업중앙회	203	
대한당구협회	123	
한국전자유기장협회	251	

단체명	차율지도원	비고
합계	3,655명	
대한요식업중앙회	550	

- 차율지도원의 직무

•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하는 차율지도규

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지도

- 식품위생법에 의한 임검사항 및 시설기

준지도등

- 지도점검결과 행정기관에 통보

## 라. 지도단속 실적

1986. 12. 31(단위: 개소)

구 分	단속건수	적 합	부 적합	부 적 합 내 용				고 발	
				허가취소	영업정지	시설개수	경고등	허 가	무허가
계	758,524	609,243	149,281	15,014	11,408	63,529	59,330	533	10,631
식품 접객 업 소	447,923	345,954	101,969	10,156	6,015	43,803	41,995	168	7,838
식품제조 가공업소	23,757	18,671	5,086	436	981	1,878	1,791	18	412
환경접객 업 소	241,645	206,439	35,206	3,629	4,114	15,794	11,669	328	2,200
판매운반 처리업소	45,199	38,179	7,020	793	298	2,054	3,875	9	181

## 2. 문제점

### 가. 영업주 및 종사자

#### ○ 식품제조업소

- 제조기술 미약
- 경영규모의 영세성
- 종사자의 위생관념 미흡

#### ○ 식품접객업소

-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국민 향락추구로 유통업소 증가
- 종사자의 평생 직업의식 부족(일시적 종사)
- 시설미흡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 미흡
- 준법정신보다는 이용객의 취향에 편승하여 퇴폐, 변태영업

#### ○ 환경접객업소

- 업주와 종사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
- 영업주의 직업윤리의식 결여
- 이용객의 퇴폐성향에 적극적인 편의제공으로 수익증대 집착

### 나. 소비자(고객)

#### ○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향락 추구 경

### 향

- 일부 저소득층의 염가제품 선호 경향
-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의 고발정신 미흡
- 제품의 선택능력 부족

### 다. 지도단속

#### 1) 행정 분야

- 지도단속 공무원의 인력 부족
  - 소요인력 2,183명에 대하여 현재 550명으로 1,600여명 부족
    - \* 현재 1인당 감시대상업소 : 783여개소임
- 위생감시원의 전문성 결여
  - 위생관계 종사 공무원은 1,068명이나 감시원 자격자는 550명에 불과함
- 위반행위가 많은 야간 감시 곤란
- 감시 공무원 의지 및 사명감 결여
  - 지역사회의 친분등으로 단속기피 목인
  - 대도시의 경우 빈번한 인사 전보로 근무기간 중 지역사회내의 원성회피 심리 내재
- 업종 단체별 자율지도 기능 미흡
  - 자율지도원의 인원 및 자질부족
  - 자율지도와 권위의식으로 인한 마찰

- 자율지도와 행정감시의 보완 체계 미흡
  - 자율지도 우수업소에 대한 행정감시 감면등 우대조치 미정착
  - 일선기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불신

### 3. 개선대책

#### 가. 목표

식품제조·가공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위생적으로 제조된 우수한 식품을 공급하고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의 증진과 '88서울올림픽에 대비

#### 나. 기본방향

- 부정·불량식품 발생요인의 근원적 제거
  -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조공정 중점지도 강화
  - 취약업소, 사회적 문제식품 중점관리
  -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행위 단속
-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도모
  - 주방, 화장실등 위생시설개선 지도강화
  - 주문식단체 정착지도
  - 준수사항 철저 이행 유도
  - 퇴폐, 변태행위 중점단속
- 무허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
  -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등 최고행정처분
  - 무허가 업소는 지속적인 고발로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
- 교육 및 홍보 강화
  -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에 관한 사명의식 고취 교육
  -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및 고발신고운영센타 적극 활용
- 지도단속체계 확립
  - 위생감시원의 점진적인 보강 및 전문요원화 유도
  - 업종별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동 내실화

-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지도결과의 평가

#### 다. 개선대책

##### 1) 단속계획

가) 부정, 불량식품 근절

##### ○ 제조업소 지도점검의 내실화

- 자가품질관리 제도의 정착 유도
- 제조시설이 현대화 되도록 유도하고 시설환경의 청결여부와 제조공정의 합리성에 유의하여 지도
- 원료구입과정, 제조공정, 품질관리등 중점단속

##### ○ 취약지(업소) 유통식품 중점지도관리

- 시장 및 학교주변, 저소득층주거 지역, 유원지등에서 부폐변질, 무표시식품등의 취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업소를 취약업소로 지정 중점관리

##### ○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지도단속

-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과 품질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표시사항과 광고내용을 정밀히 조사확인

##### ○ 수거검사를 통한 식품 품질 보장

- 업종 및 품목별로 월별 수거계획을 수립,년중 수거하여 불량제품 유통방지

##### 나)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

##### ○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등 최고행정처분사항 사후확인 철저

##### ○ 무허가업소 및 퇴폐업소는 지속적인 고발로

무허가 및 퇴폐영업 근절

- 고발할 경우 고발장에 종전 고발사실등 중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

##### 2) 홍보 교육강화

##### ○ 관련분야(보건교육, 민간활동, 학교교육, 언론기관등)와 협조로 효과적인 국민계몽

##### ○ 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

- 법정 교육시간 이수 및 전문적인 강사 선정

- 소비자고발 유도
  - 고발신고센타의 활성화
  - 소비자보호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소비자보호 운동
    - 3) 지도단속체계 확립
- 행정기관별 주요 감시활동 범위
  - 보건사회부
    -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첨가물등 식품 제조업소(7종) 지도단속
    - 단속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    - 특별지시사항 지도단속
    - 시·도 단속사항 확인점검 및 분석평가
  - 시·도 및 시·군·구
   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한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
    - 중앙의 특별지시사항
    - 민원사항 처리
- 위생감시의 활성화
  - 위생감시 전문 인력의 점진적인 증원

'87	'88	'89	'90	'91
600명 (55)	900 (300)	1,100 (200)	1,300 (200)	1,500 (200)

#### ○ 위생감시 소요인력 판단

구 분	감시대상업소	연간법정점검 소요회수	일일점검 가능업소	연간소요인원
계	430,881개소			1,457명
제조·가공업소	16,398	2회	2개소	131
판매·운반업소	44,722	2회	5개소	143
식품접객업소	229,762	2회	5개소	735
환경접객업소	139,999	2회	5개소	448

- 연간소요인원=감시대상업소수×법정점검회수÷일일점검가능업소수÷250×2
- 수시중점 단속 소요인원
  - 경기점검업무량의 50% 기준=726명
- 부족인원

- 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 증대와 내실있는 교육제도 확립
  - 무사안일 부조리 방지
  - 효율적인 단속능력 제고
  - 적출사항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
- 업종별 직능단체 자율지도 기능 내실화
  - 전문적인 자율지도원 확보
  - 자율지도원의 반복교육 강화
  - 자율지도 결과를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
- 행정기관의 위생감시와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기능 연계
  - 중복적인 지도단속 방지
  - 자율지도 결과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처리

#### 지도점검 결과 평가제도 도입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을 중앙에서 분석 평가
- 자율지도 결과를 각 행정기관별 분석 평가
- 매년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익년도 단속계획에 반영
  - \* 분석, 평가방법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과 협의

- 총소요감시 소요인원: 법정 정기감시인원(1,457명)+수시중점단속인원(726명)=2,183명
- 부족인원: 총소요인원(2,183명)-현감시원(550명)=1,633명